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기존의 건강보험증 발급·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,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비하며,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·발급 근거를 마련하고, 모바일 건강보험증 양식 신설(안 제5조제2항 후단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)
- 나.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(안 제7조)
- 다. 이의신청서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하고, 신청인란과 대리인 기재란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정(안 별지 제32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8. 21. ~ 10. 5.)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단이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
나. 본인의 사진
2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·관리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
나. 본인의 사진

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모바일 건강보험증

가입자(세대주)

성명 :
생년월일 :
증번호 :

전화번호: 1577-1000

상세정보 열기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보험급여를 받으실분

성명 생년월일 급여개시
유 효 일

발급일자

이 의 신 청 서

※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① 신청인 (처분을 받은 자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(e-mail)	
	주소		
② 대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(e-mail)	
	주소	신청인과의 관계	

③ 송달장소 (우편물 수령지)	
---------------------	--

④ 처분의 내용	(처분지사:) (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)		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⑤ 처분이 있는(도달한) 날	년	월	일
-----------------	---	---	---

⑥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	(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)		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	--

⑦ 처분지사의 고지 유무		고지 내용	
---------------	--	-------	--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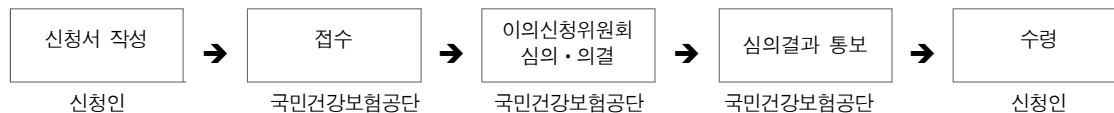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작성 방법

-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, 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, 보험급여,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적습니다(법인인 경우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).
- 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.
- ③ 우편물(이의신청 결정서 등)을 수령할 주소지를 적습니다
-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, 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, 보험급여, 보험급여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 내용을 적습니다.
※ (처분지사:) 해당 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적습니다.
- ⑤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⑥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·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.
- ⑦ 처분지사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) ① (생 략)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 ③ · ④ (생 략)	제5조(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공단이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) 법 제12조제3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”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.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 1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<u>사진이 붙어</u>	제7조(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. 1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<u>다음 각 목의</u>

현행	개정안
<u>있어</u>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<u>국가기술자격증</u>,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2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·관리하는 것으로서 <u>사진이 붙어</u>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</u>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나. 본인의 사진 2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·관리하는 것으로서 <u>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</u>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나. 본인의 사진